

〈별표71-3〉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분

약관에 규정하는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 약제성분'은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94호, 2023.1.1. 시행)' 제4조 별표3(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)에서 [별첨2]에 해당하는 아래의 약제성분을 말합니다.

약제성분명	주사제
1. Alteplase	주사제
2. Tenecteplase	주사제
3. Urokinase	주사제

주) 향후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제4조에 해당하는 약제성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.